

제433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4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2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8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8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8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8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8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8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8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8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9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9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9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9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9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9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9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9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9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10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0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1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10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상정된 안건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5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5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5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5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5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5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5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5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5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6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6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20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20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2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20
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30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32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32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32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32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소위에 이어서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1분)

○소위원장 윤준병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저번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더 심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내용은 제외하고 쟁점이 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소위에서 한 번 일회독을 하셨고 또 불참하신 위원님들께도 심사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한 번 보내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해서 작성한 수정의견을 한 번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생산기반 약화와 임차농 보호의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법률안의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제시했던 수정의견의 조문별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는 수정의견의 조문별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또 농식품부와 추가로 협의해서 마련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수정이 있으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1조(목적) 규정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또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생산기반 약화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신 점을 감안해서 법의 목적에 ‘농업생산기반 보존’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조(정의)는 별다른 수정이 없었고요.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도 아까 목적 조항에서 포함시켰던 그런 농업생산기반 약화나 농업생산성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라는 책무를 또 추가하였습니다.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

른 농지에만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목을 추가해 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설명 좀 드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업인들 입장에서선 축사라든가 나목에 해당되는 농업생산시설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법에 그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현재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사업이 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그동안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사항들 중에서는 일부……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사업만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을 걸러 내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부에 즉시 통보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어제도 해수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도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양어장 있지요, 양어장. 논에다가 양어장을 해요. 그러면 그 경우는 그분들이 양어장 할 때…… 아마 바닷가도 민물을 이용해서 바닷고기를 길러 내는 데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아시다시피 장어가 대표적인 어종일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메기라든지 아예 그냥 민물고기들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풍수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양어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면 양어하기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고, 그것도 고기 농사니까 농사잖아요. 그리고 재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일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컨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축사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양어장 하시는 분들과.

특히 저희같이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하시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비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 또 하다못해 그것도 고깃배잖아요, 민물에서. 그것도 450척 정도 되는 배가 있는데 보험 가입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가입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수협이 없다 보니까 각종 지원에서 다 소외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논의된다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논에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데, 소득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달리 봐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 조항으로 되서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분들 양식 계속할 수 있게끔 법안까지 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을 배제한다는 부분은 뭔가 조금은 더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

는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실 용의 있으신지?

윤원습 국장님 자리에 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정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양어장, 그러니까 간이 양어시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은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아마 12년 받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것 기간 연장 법안 통과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것 기간 연장을 하고 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태양광을 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지금 임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라든지 거기에서 태양광을 하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양어장 같은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에다가 또 그 위에 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타용도 일시사용의 대상이 될 거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축사 건축물은 지금 현재 농지법상 허용행위로 해서 이용시설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또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추가를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개념으로 건축물 위에, 그러니까 이용행위 위에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적인 개념을 갖다 추가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양어장 위에 새롭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분리해서 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세트로 봐야 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축사나 이른바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하는 것과 양식장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농지법에는 건축물 위에 있는 지붕 거기에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양어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임호선 위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은 농지법상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컨대 그분이 다른 용도로, 양식장을 그만두고 거기서 그냥 일반 벼농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성격과 그대로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저희 생각에는 영농형 태양광법보다는 농지법상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지법과 관련된 농지의 형태라든지 편입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 제정안을 만드는 부분이어서 좀 더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목적에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취지를 추가로 포함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농지를 잘 활용하는,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는 차원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좀 해 보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을 좀 더 확대하거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진행하시지요.

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태양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목을 추가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요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 시설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농지를 전용을 하면 이미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시설의 경우도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법에 이렇게 협소하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서 협소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이후에 농지에서 생산시설에 올라가 있는 태양광이든 뭐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빠르게 신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면서 농촌 내에서 이것을 수용성을 갖게 만드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농지를 활용해서 들어와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그 책임이 사실은 전적으로 농림부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버섯 재배사에다 버섯 재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시설 얹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농림부는 ‘그것 우리 소관이 아니야’라고 해서 농지를 어떤 식으로 훼손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방치를 해 뒀던 겁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이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했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지나간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 많은 행정력과 너무나 많은 재정 손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농민들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그토록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와서야 이것을 수용성 있게 좀 받아들이느냐, 그 과정에는 농림부의 무책임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서 들어와 있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저거는 전

기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오실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저는 이것 볼 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나목을 집어넣어서 농림부가 이것을 관리해 줄 것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화되어 있고 만약에 태양광 시설이 올라가 있으면 농지 거래 안 합니다. 팔지 않습니다, 이것. 그냥 태양광 소득으로 해서, 이게 얼마든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는 법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여기다가 경작할 수 있도록 맡기고 소유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로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면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세대 이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폭넓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농림부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농지뿐만이 아니라 농축산물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념에 넣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하실 자신 없으시면 가목으로 규정해서 농지에다가만 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도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농지법 아무리 바뀌 봐도 이것 세대 이양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속에 의해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농지 안 넘어갑니다. 이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전에 태양광 설치했던 것 이게 사실상 농촌에 외부 광풍이 불 정도로, 투기 광풍이 불 정도로 부작용이 있었던 점에 대한 지적이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틀도 잡고 좀 해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 입지되는 것과 유사한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좀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고. 또 길어지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2페이지의 5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고 발전설비 소재지를 규정함에 있어 지난번에 읍·면·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연접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들도 같은 생활권인데 제외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가지고 조문을 읍·면·동 또 그런 연접한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동 중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다른 시·군·구에 포함된 연접한 읍·면·동도 같이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제6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관한 조항은 내용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 체계 정비와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발전부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 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주민참여 협동조합의 경우 그 외의 농지에서도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식품부 의견드리겠습니다.

5조·6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5조 1항 1호에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어 뒀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이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주시면 일반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좀 더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임호선 위원 그 부분은 삭제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몇 조까지 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7조.

○임호선 위원 24쪽의 6조 2항에 ‘농림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걸 협의로 하는 게 맞나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하는데, 이것을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아무리 참여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협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단 허가의 한 조건으로 그냥 협의보다 한 차원 조금 더 높은 정도의 뭔가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원장 윤준병 승인?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동의 정도……

○소위원장 윤준병 동의?

○임호선 위원 협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사실 행정에서 협의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그게 동의나 승인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취지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협의라는 용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정도의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23쪽의 2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결한 읍·면·동에 일정 기간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했던 문제를 바꾼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연결한 읍·면·동이면 이게 되나요?

○소위원장 윤준병 바로 옆이지요.

○임미애 위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드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난번에 임호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창군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읍에 모여 삽니다. 농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거창군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임호선 위원 연결의 의미, 인접이라고 하면 조금 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인접한……

○임미애 위원 그때 저희가 얘기드렸던 건 읍·면으로 하지 말고 군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너무 넓은가요?

○임호선 위원 그러면 다 풀어 주는 게 돼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군 해 버리면 너무 넓어서 저희들이 했고 보통……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창의 특징이 그러하거든요. 거창은 인구의 거의 5분의 4가 읍에 모여 살고요. 농지는 다 떨어져 있어요. 연결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취지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자체가 약간의 오염 우려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와 이득을 같이 보게 하자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이었었는데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특히 생활권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생활권 단위로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연결이 아닌 인접, 저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붙어 있어야 되는……

○임호선 위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래서 생활권을 벗어난 분들에게도 이 혜택을 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고민 지점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이 있고 실제로 출퇴근하면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많고. 왜냐하면 면 단위의 생활,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 사람

들은 일정하게 문화생활도 하려고 그러면 읍 단위에 모여 살고 농사는 면으로 들어가서 짓는데 그런 경우에 연접이라는 단어가 제한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걸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이렇게 해도 실제 요건이 되는 게 10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인원들이 충족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격요건을 구비하려다 보면 지금 시골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내 동의 아파트에다가 거소를 하기도 하고 지역에 집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주소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융통성과 관련된 범위를 넓히는 것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실제 현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취지 이것은 충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해도.

일단 이렇게 해 놓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예전에 말씀 주신 내용은 좀 보완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런데 1호에다가 ‘다른 시·군·구의 연접한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해 놔는데 이게 1호에만 해 놔도 2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안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호선 위원** 1호에만 해 놔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하 같다’고 그랬으니까.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상으로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25페이지의 제8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종전 수정의견에는 허가 시 제출하는 자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대신에 직접적으로 허가의 기준을 명시해서 규정하게 하고 8조 1항에서 보면 이러한 허가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또 2항에는 발전설비계획이나 영농계획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사업 허가 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번 수정의견에 있었는데 이것 외에 또 필요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의 제9조는 문구 수정이 있는 내용이고, 제10조를 보시면 종전 수정의견에 있던 농식품부장관과의 협의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과 협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1조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여기 문구 중 8조 1항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렇게 넣어야 문구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순서가 1항에서 ‘3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저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서.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호선 위원 종전의 법안에는 계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력계통 접속방안 같은 것들을 허가 신청자가 제출하는 내용으로 담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수정의견에 보면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고려할 사항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8조 3항 5호에 보면 이게 결국 계통망 얘기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호가 전력계통 확보 문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계통 문제인데 이것을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살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서류에 담아서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신청자가 정리해서 신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호선 위원 발전설비계획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에서 구비서류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예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서류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통 접속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종전에는 담겨 있었는데 수정의견에는 그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서 2항에다 담아 줘야만, 이 부분이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앞으로 허들로 작용될 수 있어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계통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허가를 받을 사람은 계통이 돼야 허가가 나오는 거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계통망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 예를 들면 계통과 관련해서 지금 신청주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내용은 여유가 있다면 이걸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영농형 태양광법에다가 넣자고 그랬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 의견 때문에 여기다 못 넣은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대신에 전기사업법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이 내용이 되면 신청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기후부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내용을 신청할 때는 일단 그 여유가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을 담보해 와야 허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마 이렇게 해도 지금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전력계통 접속방안이라는 종전 안에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뺐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호성의 원칙 때문에 담지를 못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법안에서 전력계통 접속방안이라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법률적 용어도 좀 물어보기도 어렵고요.

○**임호선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정의견에 따르자면 결국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담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정하기 전에는 제2항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렇게 예시를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뒤의 조문과 관련해서 영농계획이라든지 발전설비계획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시를 했는데, 영애도 반영을 할 수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면 본문에도 약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제12조는 사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보완해서 법인의 합병·분할의 경우에도 승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였고 또 사업자의 지위 승계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종전 수정의견 제13조제5항에 수익 배분 규정이 있었는데 이 ‘수익 배분’ 표현이 금원인 수익을 개인별로 배분하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것보다는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수익 중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익 배분’이라는 용어를 ‘수익 환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환원의 목적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음, 14조는 종전 수정의견과 동일하고 또 제15조에는 취소 사유를 추가해서 주민참여조합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자격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주민참여조합 구성원이 10인 이상 돼야 되는데 만약 한두 명이 빠졌을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걸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사업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규정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명확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34페이지의 16조(과징금) 규정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부과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이 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7조는 종전과 같고, 18조는 임차인 보호 규정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표준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서 표준계약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19조부터 29조까지는 일부 자구 수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조 규정도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문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의견에 대한 수정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 지나가긴 했는데요, 31쪽에 보면 발전사업자의 수익 일부를 환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그 뒷부분을 ‘1항 제1호와 2호에서 규정된 지역’으로 수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잊어 먹기 전에, 간단한 사항이라서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확인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아니아니요, 2호·3호가 맞는데 약간……

○임호선 위원 2호·3호가 아니잖아요. 3호에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재생에너지지구를 말하는……

○임호선 위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수익 배분이 개인 농업인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 수익 환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는 해당이 안 되고요 5조 1항 2호·3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37쪽의 18조 4항 ‘농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임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임차인이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대집행 하고 나중에 구상권……

○임미애 위원 구상권 청구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여기 대집행도 명확하게 하려면 ‘대집행법에 따른’ 이렇게 해서 대집행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그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42조에 ‘대집행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42조에 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윤준병 오케이.

일단 지금 영농형 태양광법 내용은 다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문구 정리를 해서 일단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세요.

○임미애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미애 위원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진흥구역이 아닌 농지 그다음에 하나는 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지정이 된 곳 그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된 곳은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구 지정이 된 곳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가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농조합……

○임미애 위원 개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개인 또는 영농조합.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영농 형태가 임차인 농지…… 임차인에 의해서 45%가 넘는 것으로 통계를 봤는데, 임차농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통계 갖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 일단은 그 정도……

○임호선 위원 4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섭 47%의 농지 면적이 임대차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 농지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절반에 가까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전종덕 위원님께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제도가 47%에 달하는 대한민국 농지 문제의 가장 심각한 정책적 수단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변화를 초래할 혹은 위험을 안고 있는, 우리가 잘못 설계를 할 경우에 거의 폭탄과도 같은. 이런 조심성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전종덕 위원님이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그런데 저도 뚜렷한 답을 못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번 국회에서는 35쪽의 임차인 보호 조항이 아마 핵심적인 조항이 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우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고 현장에 이 법이 초래할 위험성을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우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임차농 보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임차농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광주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임차농이 실제로 태양광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장기 임대차도 맺어야 되겠지만 이익을 나누는 부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절하게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라는 형태를 통해서 임차농에 대해서는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것은 그냥 어떤 제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고요. 예컨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약을 인정한다든지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에다가 그냥 그걸 포함해서 새로운 임대차의 형식을 요구한다고 하면 거의 임차농이 쫓겨나는 형태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전종덕 위원님도 명시적으로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 바가 있는데……

농지 부분은 건들지 않고 영농형 태양광 부분이 얹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얹혀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해서 임차농이 ‘내가 영농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태양광이 얹혀지거나 얹혀지지 않거나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도, 여러 모델 중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어떻게 평가를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임차농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초래할,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지금 법안에 담길 수 있는데,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원칙적으로 영농을 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쉽게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47%가 임차농인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영농형 태양광을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임대인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20년간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그 농지에 태양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영농 플러스 태양광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고 임대인은 아마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께서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광주의 경우에는 평시 평당 한 3000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걸 좀 더, 한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높게 받음으로써 임대인·임차인이 공히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글썽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차관님께서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100명 중에 그런 사례가 한두 건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예컨대 영농 의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땅을 임대해 주신 임대인들이 많아요. 많습니 다. 의외로 많아요, 그냥 귀찮고 시골말로 근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 그냥 직영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거의 형식적인,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료작물 같은 것 있잖아요. 봄에 옥수수 쪽 뿌린 다음에 그냥 거둬 가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사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임대해 주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낙관이 아니라 낭만이에요.

그래서 다만 임차농이 47%에서 45%까지 2%만 떨어진다고 해도 그 2%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우려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현재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개별 영농 규모에 영농형 태양광의 한도를 정해 놓고, 이런 사전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체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농지관리체계 속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이런 체계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이렇게 하세요. 우리 농식품부도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는 임차농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임차 기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동갱신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입법화해서 넣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임차농에 대한 두터운 보호 제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주문이시니까 이 내용 일단 잠정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107)

(11시01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13항부터 16항, 4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경과에서 보시듯이 이 4건의 법률안 중에 이양수 의원님 안은 소위에서 한 번 심사를 하신 적이 있고 나머지는 지난 3월 10일 일단 상정을 했으나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실질적인 심사는 못 하고 오늘 처음 하시는 겁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 농촌지역 보유 광역시 자치구의 계획 수립 등 허용에 관한 부분은 이양수 의원님 안과 임미애 의원님 안의 내용으로서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이외에 농촌지역을 보유한 지자체도 희망하는 경우 공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서 광역시에 소속된 농촌이 이 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 안을 소위에서 심사할 때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한정된 국가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광역시보다는 더 시급한 농촌지역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개정안을 수용하실 경우 필요한 자구 정리 등을 8페이지부터 수정의견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구청장 넣어도 되겠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소위 자료 30페이지입니다.

2번 개정안은 동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반드시 할 게 아니라 사정에 따라 재량적으로 수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으로 일부 지역만 농촌지역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연계 지원이나 특례 적용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구나 또 이를 관할하는 광역단체도 기초정책심의회나 광역정책심의회 설치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촌위해시설 명칭과 정의를 변경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 농촌위해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고 그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을 정의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또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걸로 정의하고 있는데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완화하기 위한 이런 명칭 변경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정의를 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 의미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 가지고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이 문구를 삭제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여기에 우려가 있는 시설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우려가 있는’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넣을 경우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축산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축산시설을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옥주 위원 34페이지 밑의 지하수법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 포함돼 있네요. ‘우려가 있는’이라는 항목이 있는 법률안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법에서만 빼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 축산시설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축산시설을 하는데, 농식품부가 걱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방향인데 축산시설을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는 ‘우려’ 넣는다고 그래서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려’ 넣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이전시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저는 전문위원 의견에 공감하는 바고요.

밀의 지하수법하고 이 법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 우려가 있다고 표현을 해 버리면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것보다 개인의 어떤 선호가 반영돼 버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 전문위원 의견에 더 공감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는 문금주 위원에 공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임호선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우려’ 빼고 하는 걸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39페이지의 4번 내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정책의 수립·집행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3조 2항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책무로 ‘이러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조항 자체가 ‘요청할 수 있다’지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익 여부를 판단하셔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이미 현행법 3조 2항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41페이지의 5번 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확정 전 협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협의 대상에 현행은 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외에 농식품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이양수 의원님 안은 이보다 더 넓혀서 협의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하면서 20일 이내에 의견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계획의 협의 대상에 농식품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

업의 주무 부처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양수 의원님 안처럼 협의 대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행정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고 또 법적 의미가, 법률 내용의 의미가 모호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은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43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45페이지의 6번 경관농업지구 명칭 변경 및 지정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것도 이양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경관농업지구의 명칭을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지정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경관 및 생활경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경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연경관 및 생활경관도 경관지구 요건에 포함해서 농촌경관의 유지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그런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농촌이 농업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포괄하는 면이 있으므로 명칭을 농촌경관지구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 농업을 굳이 넣은 까닭이 뭡니까?

○송옥주 위원 뻔다는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농촌경관지구로.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47페이지의 7번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주민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협정의 체결 주체로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을 ‘주민’으로 변경해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이전에도 주민협정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일부 지구 정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주민협정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에 협정 체결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포함하고 주민협의회 구성이 임의 사항인 점 등을 반영하는 등 현

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체결요건 및 인가 절차로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의 명확성과 내용적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1페이지의 8번 사업 관련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규정 신설에 관한 개정은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준공검사·준공인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승인권자 변경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5페이지의 9번 개정안은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고.

다음, 56페이지의 10번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변경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을 현재 농식품부장관이 행정행위로 지정하는 방식 대신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상기관의 업무 안정성 등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경직적으로 정할 경우에 정책의 상황적합적 집행이라든지 제도의 탄력적 운용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아 굳이 이걸 법령에서 경직적으로 운용할 실익이 있는지는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주셨습시다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58페이지의 11번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와 사유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

으로 보이고.

다음, 60페이지의 12번 읍·면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우선 지원 대상에 현행 인구감소지역 외에 읍·면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아마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정책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인구감소지역 외에 읍·면 지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넓어져서 우선 지원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결정하신 대로 광역시 자치구가 이 법에 의한 정책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보다는 읍·면 지역의 농촌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렇게 되면,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조 제12호면 이 건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 인구감소지역……

○임호선 위원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는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지역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읍·면이 포함된 시·군이 139개고요 인구감소지역 플러스 활력 지역이 필요한 게 89개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군이 6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계층적으로 만약에 동 지역이 포함된 시 같은 경우에는 21개가 되고 자치구는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상으로는 21개 시, 자치구 19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더라도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은 어차피 한정된 자원의, 나름대로 그것이 효율적 배분으로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이 법령 개정이 그간 여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사실 추가해서 담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 포션이 느는 게 아니면 결국 지원 대상 지역이 줄거나 아니면 지원 예산이 줄거나 그렇지요. 그 지원을 받는 읍·면 입장에서는, 면 단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촌공간 재구조화든 재생이든 해야 될 대상 지역은 널렸잖아요.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재정자립도에서도, 앞의 표에서도 보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특히 면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정주여건도 좀 개선하고 예를 들면 인구 소멸이라든지 유출을 막아 내면서 농촌을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그런데 예컨대 광역시까지도 대상을 넓히고 거기에까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예산 지원이든 지정을 받았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경쟁 관계에 있

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이 오히려 예전보다, ‘같은 조 제5호가 목에 따른 농촌과’ 그러면 이 농촌이 읍·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제2조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읍·면을 우선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내용은 여기서 포섭이 된다고……

○임호선 위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포섭이 된다고 그렇게 규정화돼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임미애 의원님이 이렇게 읍·면으로 딱 박아 놓은……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내용은, 앞의 같은 조 제5호가목이 지금 읍·면 지역이거든요.

○임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농촌국장입니다.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재 규정의 재생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 거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인데 현행 법률로서는 진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나 임미애 의원님 안을 보면 진천 같은 경우에 읍·면도 포함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과산 같은 곳만 됐는데, 인구감소지역이고 진천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서 우선 지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진천의 읍·면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63페이지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각종 사회기반이 훼손된 특별재난지역의 재생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특별재난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해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계속 누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특별재난지역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해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 기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넣되 이것 추가하자 이런 애가지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수단이나 목표, 방향이 전혀 다르고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다른 예산 항목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가 농업 예산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이유와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라고 하는 목적과 특별재난지역 회복에 대한 정책적 그리고 재정적 수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운운하는 이 논의 자체가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사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재난을 입은 그 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시기에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지원은 있다가 그 뒤에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간의 재구조화나 어떤 이런 정책이 필요할 때 그런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별다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넣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권한은 전적으로 농식품부가 있으니 농식품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재난의 경우에는 복구하는 데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108개 시·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임호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여기 들어가는 것에 반대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문 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법에 담길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재난지역을, 재난을 극복해서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것은 행안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재난지역 지원 예산이 농업 예산에서 빠진다고 하면 다른 농업 예산은 감축됩니다.

지금 이거 차관님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자료 요구를 우리 방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불만이 나오는 게 도 예산, 군 예산이 기본소득 예산으로 담기니까 그와 관련된 다른 농업 지원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는 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료 요구를 내놨거든요.

제가 왜 이 일례를 드냐 하면 특별재난지역 여기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예산을 담는 내용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산 문제인데 그걸 법에다가 담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특별 공간 재구조화 지역을 선정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인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법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 지원이라는 것까지 법에 담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임호선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이 농림부 사업이나 행안부 사업이냐가 아마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하시는 거라면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이것은 삭제하고 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필요하면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65페이지의 14번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시행계획 외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용·관리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현행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이보다 간소화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및 사업만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만 분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농촌의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또 기존 절차인 시행계획의 실효성 및 활용도가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양자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잘 형량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은 개정안을 수용하실 경우 농촌특화지구계획 사항에 현행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해서 제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15번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따른 부수 조항 개정에 관한 사항은 만약에 이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관한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조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65쪽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수용하고, 69쪽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따른 부수 조항 개정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75페이지의 16번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0일의 기간이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인지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 입법례는 지방의회 심의 기간을 30일로 하는 법도 있고 또 60일로 하는 법도 있습니다. 적정 기간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0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의회가 30일 내에 의견청취가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지방의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셨나요? 보통 지방의회 회기가 100일 아닌가요? 1년 동안 100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별표를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기간은 30일 그다음에 60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30일 내에 의견청취가 가능하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하는데 지방의회 회기가 사실은 100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열리는 기간이 많아요. 그래서 30일이라는 게 되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수용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77페이지의 17번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의제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가 지정된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시 농지전용 허가를 각각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행위의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각각 구분하여 의제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이 부분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79페이지의 18번은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침익적 처분인 해약요건이 이 법률안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의 19번 개정안은 농촌협약의 체결 주체를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79쪽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83쪽의 농촌협약 주체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86페이지의 20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정 방식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둔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1시35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력번호 허위 표시 및 게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2페이지의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현행법은 이력번호의 표시와 관련해서 거짓 표시 또는 게시와 미표시 또는 미게시에 대해 동일 수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허위 표시와 미표시 중에서 허위 표시의 경우는 고의성이 더욱 명징하고 또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악영향이 더 크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상향을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미표시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는 4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듯이 매년 수백 건씩 적발되어 근절이 되지를 않고 있고 위반 행위 대부분이 거짓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6페이지에서 보시듯이 현행법 35조에서 제32조제2항제6호 등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가 연 2회에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터넷으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35조에 대한 조문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이러한 처벌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이거 단속은 누가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자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자체가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명절 때나 이럴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지자체 어느 부서가 이걸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주로 정부는 농관원이 하고 지자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농관원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자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독자적으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처벌 규정을 강화를 하는 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허위 표시가 없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도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시에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명절 때만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기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명절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 좀 정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력표시가 되는 게 한 우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정기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의원님의 이 입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거짓 표시와 미표시에 대한 처벌과 벌금 규정을 달리함으로 해서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짓 표시를 하기가 싫으면 차라리 미표시를 해 버리면 벌금이나 그런 게 절반이어서 이력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착하고 이력제가 조금 더 현실화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법도 만들고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거짓·미표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 하면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좀 더 의도적인……

○**송옥주 위원** 거짓도 문제지만 미표시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송옥주 위원** 이력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실되게 표시를 하고 알려야 된다는, 고지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는데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알기는 하지만 그러면 차라리 표시를 안 해 버릴까…… 단속 들어가면 차라리 표시를 다 떼 버리든지 버려 버리면 이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현재 처벌 수위가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로 휴대폰으로 이력번호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의도적이라고 봤을 때는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병진 의원님 재임 중에 제안한 내용인데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정리해 주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11시41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 4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4페이지의 1번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 계획의 사항에 포함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쌀 소비 촉진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 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통주 제조에 쌀 이외에도 다양한 농산물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을 포함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6페이지의 2번 개정안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전통주 등 제조 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주를 통한 국내산 쌀 소비 촉진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국내산 쌀을 사용하는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내국민대우 원칙과 관련된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정부에서도 WTO 내국민대우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주 등 제조업자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은 이미 기존 5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발의한 취지는 좀 다른데 그렇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8페이지의 3번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등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술 품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과하려는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에 순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과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형벌 양산을 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체계상 정합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정명령을 다른 조문인 28조에 옮겨 규정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2페이지의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유사 명칭 사용자에게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이러한 기관의 신설 및 운영에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농진청이나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행법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 설립에 따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획예산처나 농진청 등에서는 수용이 곤란하거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만약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 필요한 일부 자구 정리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조직·예산 관련 담당 부처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걸 계속심사하자는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16페이지의 5번 지역 특산주의 범위 확대에 관한 개정은 지역특산주에 사용되는 원료의 조달 범위를 확장하고 주원료의 개념을 삭제하면서 또 인접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광역자치단체 내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 변동에 대응해서 지역특산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인접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역특산주의 외연 확대에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외연 확대 및 규제 완화가 지역특산주의 정체성 및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개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8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지역특산주 및 전통주의 정의가 이 법뿐만 아니라 주세법에도 있고 또 이런 주원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려고 계신데 주원료에 관한 내용은 이 조항뿐만 아니라 이 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

적으로 다 정비해야 되는 법체계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부칙은 하위법령 제정 및 국민들의 숙지기간 확보를 위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정부 측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 중에 전통주의 원료 문제, 수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좀 풀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라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브랜드화하는 브랜드 내용 이 내용들이 꼭 딱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전통주라고 하면서 전통주가 제공되지 못하는—이 규정 때문에—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고민 그리고 대안 이것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별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어차피 전통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우리술 품평대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때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주 제조업체에 한해서만 우리술 품평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달지 또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달지 이렇게 제한을 좀 둘 필요는 있겠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좀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농림부가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윤준병 오늘 법안 심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심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 오늘 심의된 내용을 공유해서 다음 법안 심의가 될 때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다만 국힘 위원님들 전체회의 때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심의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항의도 하신 분들인데 정작 장이 열리면 이렇게 불참하시면서 법안 속도가 늦어진다는 부분에 대

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법안 심사 속도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문금주 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문금주 위원 최근 국힘의 행태를 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여야 합의로 처리된 환율안정 3법에 대해서 본회의 처리를 이렇게 막아 놓고 이제 와서 정부한테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습시다만 전체회의 때 농지법 빨리 심의 안 해 준다고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위원님이—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국힘이—이런 법안소위 때 지금 제대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행태 이걸 진짜 국민들께서 비난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문금주 송옥주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청가 위원(1인)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농업정책관 윤원섭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